

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해당하는 내용 앞의 []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신청인 (개인)	성명 (서명 또는 인)		주민등록번호
	주소 (시·도) (시·군·구)		※ 시·도, 시·군·구까지만 작성 (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.)
	대상자와의 관계		연락처
	수수료 면제 대상 []국민기초생활수급자 []국가보훈 대상자 []그 밖의 대상자()		
신청인 (법인)	기관명	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 (서명 또는 인)		연락처
	소재지		
	방문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연락처
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대상자	※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.		
	성명	주민등록번호	
신청 내용	열람	[] 등본 사항 [] 초본 사항	
	※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·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		
	등본 교부 [] 통	1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[] 전체 포함 [] 최근 5년 포함 [] 미포함
		2. 세대 구성 사유	[] 포함 [] 미포함
		3. 세대 구성 일자	[] 포함 [] 미포함
		4. 세대원의 전입일 / 변동일	[] 포함 [] 미포함
		5. 세대원의 변동 사유	[] 포함 [] 미포함
		6.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	[] 포함 [] 미포함
		7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[] 포함(□본인, □세대원) [] 미포함
		8.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	[] 포함 [] 미포함
		9. 동거인	[] 포함 [] 미포함
		10. 외국인 배우자 / 외국인 부모	[] 포함 [] 미포함
	초본 교부 [] 통	1.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	[] 포함 [] 미포함
		2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	[] 전체 포함 [] 최근 5년 포함 [] 미포함
		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	[] 포함 [] 미포함
		4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	[] 포함 [] 미포함
		5. 전입일 / 변동일	[] 포함 [] 미포함
		6. 변동 사유	[] 포함 [] 미포함
7. 병역 사항		[] 포함 [] 미포함	
8.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번호 / 외국인등록번호		[] 포함 [] 미포함	
용도 및 목적			
증명 자료			
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

신청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.

*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[]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[] 독립유공자, [] 국가유공자 []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[] 참전군인, [] 5·18민주유공자

[] 특수임무수행자, []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

※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 사항

1.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,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.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2. 본인·세대원이 본인·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·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「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」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해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3. 신청인은 '신청 내용' 칸의 각 항목에서 '포함', '미포함'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.
5.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'9. 외국인 배우자 및 부모'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(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만 '포함'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6.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.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(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'포함'을 선택할 수 있고, '4. 병역사항'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(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),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'포함'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7.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·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'용도 및 목적'을 작성해야 하며,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8. 「주민등록법」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9.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(서명 포함)이 있어야 합니다.
10.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